

의안번호	2203344
의 퇴 인	안상훈 의원
회 답 일	2024. 9. 23.
추 계 번호	24C3305

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26조의2(시범사업의 실시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
2	안 제30조의2(사회보장제도의 평가)	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※ (안 제44조) 업무 위탁 가능
3	안 제30조의3(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)	보건복지부장관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적어도 3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함 ※ (안 제44조) 업무 위탁 가능
4	안 제32조의2(사회보장지출통계)	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지출 통계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함 ※ (안 제44조) 업무 위탁 가능
5	안 제44조(업무의 위탁)	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 제30조의2에 따른 사회보장 제도의 평가, 안 제30조의3에 따른 사회보장 재정추계 관련 자료의 수집·조사 및 분석, 현행법 제32조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관련 자료의 수집·조사 및 분석, 안 제32조의2에 따른 사회보장지출통계 관련 자료의 수집·조사 및 분석, 현행법 제43조에 따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 운영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, 공공기관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6조의2(시범사업의 실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30조의2(사회보장제도의 평가)	
3	안 제30조의3(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)	
4	안 제32조의2(사회보장지출통계)	
5	안 제44조(업무의 위탁)	

2. 상세 사유

- (안 제30조의3·제32조의2) 현재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(보건복지부)은 중장기 사회보장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통계 관리를 위해 2021년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업무 위탁¹⁾을 하고 있고, 별도로 사회보장위원회 내에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두어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음
 - 가장 최근 사회보장재정추계 결과가 발표된 시점은 2020년 8월(4차 추계)이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도 추계모형 개발 및 고도화 등을 연중 추진하고 있으므로, 3년 주기 추계결과 발표를 위해 추가재정소요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
[표 1] 보건복지부 중장기 사회보장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통계 관리 관련 재정사업 예산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	2021	2022	2023	2024
사회보장재정·통계센터 운영지원 (업무 위탁비)	700	700	700	850
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	110	50	99	99

자료: 보건복지부

- (안 제26조의2·30조의2)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시범사업 및 평가 실시 여부 및 사업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 - 향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본 개정안에 따라 실시하게 될 시범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을 알 수 없고, 안 제30조의2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할 사회보장제도의 종류와 평가의 방법·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정부의 평가 주기, 방법 등을 알 수 없음

1) (1차) 2021~2023년, (2차) 2024~2026년
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